

[별표 3] <개정 2009.5.13>

과태료의 부과기준(제34조 관련)

(단위 : 원)

위 반 행 위	해당법조문	과태료금액
1. 법 제1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축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때	법 제41조제1항제1호	100만원이하
2. 법 제3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축사 협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때	법 제41조제1항제1호	100만원이하
3.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	법 제41조제1항제2호	
가.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보고를 한 때		50만원이하
나. 검사를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한 때		100만원이하
4. <삭제>		
5.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축사사망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	법 제41조제2항	3만원이하
6.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격이 취소된 후 자격증 및 자격수첩을 반납하지 아니한 때	법 제41조제2항	
가. 반납하지 아니한 기간이 1월미만인 때		10만원이하
나. 반납하지 아니한 기간이 3월미만인 때		20만원이하
다. 반납하지 아니한 기간이 6월미만인 때		30만원이하
라. 반납하지 아니한 기간이 1년미만인 때		40만원이하
마. 반납하지 아니한 기간이 1년이상인 때		50만원이하
7.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축사업무신고사항의 변경신고 또는 휴업·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	법 제41조제2항	
가. 신고하지 아니한 기간이 1월미만인 때		5만원이하

나. 신고하지 아니한 기간이 3월미만 인 때	10만원이하
다. 신고하지 아니한 기간이 6월미만 인 때	20만원이하
라. 신고하지 아니한 기간이 6월이상 인 때	30만원이하